고용노동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. 24.(수) 배포 즉시

“안 잡히면 그만?” 소액이라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

-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

고용노동부가 1. 15.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, **고용노동부 전주지청**(지청장 이경환)은 1. 24.(수), **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**한 **건설업자 ㄱ 씨**(59세)를 「**근로기준법**」 **위반 혐의로 구속**했다.

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**가명을 사용**하면서 **타인 명의로 경제생활(휴대전화, 금융계좌 등)을 영위**하는 등 **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.**

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, **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*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**도 있었던 데다가,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**시기별·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**이 있다.

* [공소시효 만료 내역] 고소사건 2건, 피해근로자 5명의 16,631,620원

또한, ㄱ 씨는 **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**하였는데,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, **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·도주의 우려**가 상당하여 **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**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.

이경환 전주지청장은 “이 사건 구속은 **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·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**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**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**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	책임자	과 장	양헌우 (063-240-3388)
	근로개선지도1과	담당자	근로감독관	유헌희 (063-240-3365)
			근로감독관	이동하 (063-240-33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